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 8.

특 허 청

산업재산인력과

1. 개정이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실무수습은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실무수습의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 해당 실무수습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실무수습의 내용, 절차 및 실무교육 불인정 사유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교육의 실시(안 제2조 및 별표 신설)

집합교육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집합교육기관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집합교육 계획을 집합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며,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현장연수의 실시(안 제3조 신설)

특허법인 등의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도록 하고,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특허청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함.

다. 실무수습의 불인정 사유(안 제4조 신설)

실무수습의 출결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및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변리사 자격증의 발급(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서에 집합교육 수료증 사본, 현장연수 확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특허청장은 집합교육 수료증 사본 및 현장연수 확인서 사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급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5. 11. ~ 6.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변리사자격의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의 적정한 운영)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4조의2로 하고,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집합교육) ①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집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집합교육 계획을 집합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항목별 이수시간을 적은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교육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현장연수) ① 영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현장연수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영 제2조제6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무수습의 출결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2.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현장연수에서 실습하여야 할 업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실습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의2(종전의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으려는 경우

가.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
합판)

나. 제2조제3항에 따른 집합교육 수료증 사본

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현장연수 확인서 사본

라. 변호사 자격자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마.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
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합판) 1장

제4조의2(종전의 제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기관과 현장연수기관에 확인
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변리사회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
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리사 자격을 변리사 자격증 발급
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
에게 그 자격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집합교육의 내용(제2조제1항 관련)

| 과목 구분 | | 내용 | 이수 시간 |
|----------|----------------|-----------------------------------|----------|
| 공통 과목 | 소양 교육 | 변리사법 제도, 직업의 이해,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지원 등 | 10시간 이상 |
| | 산업재산권법 실무 | 국내법 제도 및 판례, 외국법 제도, 국제출원 제도 등 | 50시간 이상 |
| |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국제출원, 선행 기술 검색 등 | 120시간 이상 |
| 선택 과목 | 심판·소송 실무 | 심결취소소송, 침해소송, 국제 분쟁, 협상 및 계약 등 | 70시간 이상 |
| | 과학기술의 이해 | 자연과학 개론, 산업기술 동향 등 | 70시간 이상 |

비고

1. 실무수습 대상자는 공통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2.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선택과목 중 심판·소송 실무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선택과목 중 과학기술의 이해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4.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선택과목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해야 한다.

변리사 현장연수 확인(신청)서

| | | | |
|-----|----|------|-----------------|
| 신청인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 (한자) | |
| | | (영문) | 전화번호 |
| 주소 | | | |

| | |
|---------------------------|---------------------------|
| 현장연수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개월 일) |
| 현장연수 주요내용 (간략하게 적으십시오) | |

| | |
|----------|----------------------------|
| 자격 취득 근거 | [] 「변리사법」 제3조제1호(년도 제 회) |
| | [] 「변리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변호사 |

| | |
|--------|-----------|
| 현장연수기관 | 현장연수기관 주소 |
|--------|-----------|

| | |
|----------|-----------|
| 현장연수 지도관 | (서명 또는 인) |
|----------|-----------|

「변리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신청인의 현장연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현장연수기관장 귀하

위 신청사항을 확인합니다.

현장연수기관장

직인

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신규 [] 재발급)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 성명 | (한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 (한자) |
| | | (영문) 전화번호 |
| | 주소 | |
| | 등록기준지 | |

자격 취득 방법

- 시험 합격자(년도 제 회)
- 변호사
- 공무원 경력자

재발급 사유(자세히 적으십시오)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리사 자격증의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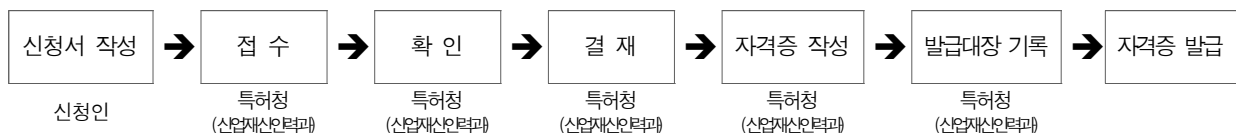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발급받으려는 경우 가.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1장 나. 집합교육 수료증 사본 1부 다. 현장연수 확인서 사본 1부 라. 변호사 자격자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1장 | 수수료 없음 |
|------|---|-----------|

처 리 절 차



변리사 등록신청서 ([] 신규 [] 재등록 [] 재발급)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 | | (한자) | | | |
| | | (영문)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 |
| | 등록기준지 | | | | |
| 학력 및 전공 | ()년 ()월 | 주요 경력 | ()년 ()월 ~ ()년 ()월 | | |
| | ()대학/대학원 | | ()근무 | | |
| | ()학과 졸업 | | | | |

| | | | | | |
|-------------|----|------|-------------------|--|--|
| 사무소 (예정) | 명칭 | (한글) | 전화번호 | | |
| | | (영문) | 팩스번호 | | |
| | 주소 | (한글) | 변리사 인감 (인감 날인) | | |
| | | (영문) | | | |

| | | |
|--|--------|----------|
| 자격 취득 근거 <input type="checkbox"/> 시험 합격자(년도 제 회)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경력자 | 자격증 번호 | 제 호 |
|--|--------|----------|

| | |
|-----------------------|--|
| 재발급 사유 (자세히 적으십시오) | |
|-----------------------|--|

「변리사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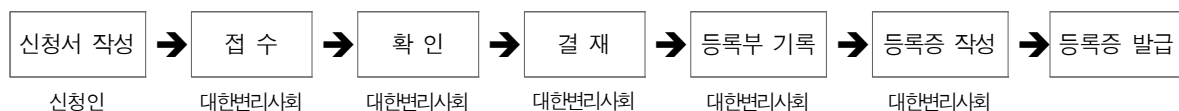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변리사회 귀중

| | | |
|------|---|---------------------------|
| 첨부서류 |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1장 | 수수료 20만원 (재발급 시 없음) |
|------|---|---------------------------|

처 리 절 차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신 설></u></p> | <p><u>제2조(집합교육) ①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u></p> <p><u>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집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집합교육 계획을 집합교육 개시 30일 전 까지 공고하여야 한다.</u></p> <p><u>③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항목별 이수시간을 적은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p> <p><u>④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교육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p> |
| <p><u><신 설></u></p> | <p><u>제3조(현장연수) ① 영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p> |

<신 설>

는 기관(이하 “현장연수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영 제2조제6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무수습의 출결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2.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2조(변리사 자격증)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 미달하는 경우

3. 현장연수에서 실습하여야 할 업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실습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의2(변리사 자격증)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으려는 경우

가.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1장

나. 제2조제3항에 따른 집합교육 수료증 사본 1부

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현장연수 확인서 사본 1부

라. 변호사 자격자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② 변리사회는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리사 자격과 변리사 실무수습 수수료 여부를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과 변리사 실무수습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 사본과 수수료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7조(실무수습)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변리사회, 변리사 사무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변리사회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실무수습의 시작 일시 및 신청 요령 등을 포함한 실무수습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내

<삭 제>

② 변리사회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리사 자격을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용,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특허청장
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
| 연 락 처 | (042) 481 - 5187 |